

---

2 0 2 3

---

설계공모  
지침서  
일반공모

---

COMPETITION  
GUIDELINES

---

(가칭)세교소프트웨어고 신축  
설계공모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 CONTENTS

## 01

### 설계공모 일반

1. 목적	01
2. 개요	01
3. 설계공모 참가자 자격 및 제한	03
4. 대표자 참가등록	04
5. 질의응답	04
6. 주요 설계공모 절차	04
7. 심사 및 당선자 선정	04
8. 당선자 행정사항	08
9. 공모규정 준수	10

## 02

###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1. 공모안 작성	11
2.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요건	13

## 03

### 사업대지현황 및 설계주안점

1. 사업대지현황	14
2. 설계주안점 및 고려사항	15

## 04

【별표1】 공모지침 위반처리 기준

【별표2】 심사평가항목

【별표3】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 예시자료

【서식1】 설계개요

【서식2】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3】 개략공사비 내역서

【서식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5】 청렴서약서

【서식6】 설계수행 협약서

【서식7】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서식8】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서식9】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서약서

【서식10】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I. 설계공모일반

## 1. 목 적

미래지향적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통하여 우수하고 창의적인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한다.

## 2. 개요

가. 용역명 : (가칭)세교소프트웨어고 신축 설계공모

나. 수요기관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다. 부지위치 : 경기도 오산시 궤동 산559-2번지 일원

라. 학교설립 개요

1) 규모 : 특성화고등학교 15학급

2) 개교(준공) 예정일 : 2026년 3월

마. 사업규모 및 내용

1) 대지면적 : 14,010.00㎡

2) 건축연면적 : 14,005.00㎡

- 실적 적용 기준: 요구 연면적의 ±1%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특성화고등학교)

4) 총예정공사비 : 금18,133,489천원 (VAT 포함)(전기, 통신, 소방 제외)

5) 총예정설계비 : 금850,669천원 (VAT 포함)(전기, 통신, 소방 제외)

※ 본 사업의 규모 및 내용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바. 설계공모 방식 : “일반 설계공모”

사. 계약방법: 설계공모 심사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예정설계비를 적용하여 수의계약 체결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아. 용역범위

1)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 2) 기본과업

##### ①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중급보통

##### ② 건축협의, 심의(지자체별 경관심의 포함),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제반비용 포함)

##### ③ 공사발주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및 절차 이행

- 교육청 요구 자료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에 따른 설계 업무 협조

#### 3) 추가과업

##### ①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업무 및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업무 등 수행

##### ②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예비인증 및 제로에너지인증(5등급이상) 업무 수행

##### 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업무 수행

##### ④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계획

##### ⑤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및 협의

##### ⑥ 지구별 에너지사용계획서 준수 및 교육청 설계지침서 준수

##### ⑦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인증(설치계획 검토)

##### ⑧ 설계안전성 검토

##### ⑨ 안전보건대장 작성

※ 각종 예비인증에 따른 인증기관 수수료 미포함

※ 설계과정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개요 일부가 조정될 수 있다.

### 3. 설계공모 참가자 자격 및 제한

#### 가. 참가자격

-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같은 법령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 업무수행 계약을 한 경우 참여가능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 2) 공동응모시 응모자 모두 1)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담당건축사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한다.
-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식 11】에 의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공고문에 명기된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나. 자격제한

- 1) 「경기도교육청 설계공모 사후 평가지침」에 따라 당선건수 제한을 받는다.
- 2) 공정거래법 의한 기업집단은 동일한 설계업체로 간주하여 당선건수는 합산, 연간 당선가능건수는 다수건수 업체의 건수를 적용한다.
-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4)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5)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설계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또한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 4. 대표자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에듀플랜”을 통해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에듀플랜:<http://plan.goe.go.kr>)

#### 5. 질의응답

가.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에듀플랜” 내 해당 공모의 질의접수 페이지에서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하다.

※ 질의문의: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우서희 (☎031-371-0783)

나. 유의사항

-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등록된 질의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기타 방법으로 질의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 6. 주요 설계공모 절차

가. 공모일정 및 절차

- 본 설계 공모의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른다.

- 1)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 2)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에듀플랜”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모참가자가 진다.
- 3)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에듀플랜”에서 해당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공자료

- 1) 본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에듀플랜”에 게시한다.
- 2) 제공자료: 본 설계공모에 참가신청한 자는 다음의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① 대상 부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 등) 관련자료
- ② SPACE PROGRAM(안)

#### 다. 기타사항

- 1) 설계공모의 참가등록현황, 공모안제출현황은 “에듀플랜”에 공개한다.
- 2) 공모안 접수 이전에 발생한 훼손, 누락 등은 각 설계공모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 3) 제출도서의 상호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공모 참가자 책임으로 한다.
- 4) 발주기관은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5) “4)”항에 따라 재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공모안이 1개인 경우에는 참여 심사위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당선작으로 선정할 수 있다.

## 7. 심사 및 당선자 선정

###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 선정

- 1) 「경기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한다.
- 2) 심사위원회는 별도 등록된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나. 불공정행위 방지 및 사전접촉 금지

- 1)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접촉을 금지한다.
- 2)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는 【서식10】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공모참가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물품·향응 요구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 ② 심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 ③ 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
- ※ ‘사전접촉’은 심사위원 선정이후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제3자를 이용한 경우 포함)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3)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해촉한다.
- 4)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당선자 및 입상자의 접촉·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당선작 및 수상작을 실격 및 무효 처리하며 다음순위로 선정한다.
- 5)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식7】 심사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피 신청하여야 한다.

#### 다. 평가기준

「경기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의 “공모안 평가” 기준에 따라 투표제로 평가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채점제로 심사할 수 있으며,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라. 실격처리기준

공모안이 【별표1】 공모지침 위반처리기준 항목과 같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마. 심사결과 발표 및 입상작 선정

##### 1) 심사결과 발표

- ① 심사결과는 심사장에서 심사위원장이 발표한다.
- ②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는 심사후 “에듀플랜”에 심사위원 실명으로 공개한다.



- ③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2) 입상작 선정과 보상
- ① 입상작 선정
- (1) 설계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당선작과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 (2) 당선작 이외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되, 입상작 수는 4개 이내로 제한한다.
  - (3)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 (4) 첫 투표에서 참여 심사위원의 20% 이상 추천을 받지 못한 공모안은 입상작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단, 20% 이상 추천을 받지 못한 작품이라도 해당 공모안이 입상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입상작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공모비용의 보상
- (1) 입상작의 공모안 작성비용은 총예정설계비의 10% 예산(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공모심사 결과 순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 4개인 경우 : 예산의 10분의4, 10분의3, 10분의2, 10분의1 지급
    - 3개인 경우 : 예산의 10분의4, 10분의3, 10분의2 지급
    - 2개인 경우 : 예산의 10분의4, 10분의3 지급
    - 1개인 경우 : 예산의 3분의1 지급
  - (2) 보상비 예산 : 금85,066,000원
  - (3) 보상금 포기 :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1)” 항 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출자비율(분담비율)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따라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 바. 승계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용역권을 공모심사 입상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보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 1) 당선자가 기본·실시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 2) 당선자가 실격,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3) 당선자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 4) 당선자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5) 기타 설계용역 진행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우
- 6)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산의 과도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 8. 당선자 행정사항

### 가. 당선자 설계자의 의무

- 1) 당선자는 심사결과 보완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당선자 및 입상자가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 및 입상된 경우에, 발주기관은 당선작에 대하여는 당선 무효로 하여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상작에 대하여는

입상을 무효로 한다. 이 때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 3)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4)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해당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 5)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별도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6) 당선자는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의 계획에 대한 발주기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7) 「경기도교육청 설계공모 사후 평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대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 8)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변경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공모 공고 시 제시한 규모와 설계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경우 공모보상비 예산의 10분의 5를 보상비로 지급한다.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9)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 나. 공모안의 사후활용 등

- 1) 당선작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 2)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발주기관 또는 주관부서는 입상작을 전시 또는 출판 등으로 사용, 공개할 수 있다.

## 9. 공모규정 준수

- 가. 본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 나. 본 설계공모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현장조사 시 각종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모든 관계법규, 제반규정사항 및 입지여건을 파악한 후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II. 공모안 작성 · 제출 지침

### [제출 관련 안내사항]

- 모든 제출물(공모안, 기타제출물)은 마감시간 이전에 업로드가 완료되어야 함  
(마감시간이 되면 에듀플랜 공모안 제출기능 자동 종료)
- 기 제출된 공모안은 공모지침서 3p 나. 자격제한 5)항에 따라  
수정 · 보완할 수 없음
- 기타제출물의 경우 마감시간 이후에는 보완 불가함
- 따라서 참가자는 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오류 · 누락파일 없이 마감  
시간 이전에 업로드가 완료되도록 조치해야 함(업로드시간 고려 필수)
- 모든 제출물의 누락 및 오류(파일손상 등)은 참가자의 귀책사유이니  
업로드전 확인 필수
- ※ 공 모 안: PNG파일, PDF파일(통합본), 3차원 시뮬레이션  
설계설명서(제안공모의 경우 제외)
- ※ 기타제출물: 청렴서약서, 설계수행확약서,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CAD파일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인감 증빙서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력증명서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일반공모의 경우 제외)

### 1. 공모안 작성

#### 가. 공통사항

- 1) 가급적 모든 공모안의 상하여백은 20mm, 좌우여백은 25mm로, 내용은  
한글 휴먼명조체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 2) 3D 시뮬레이션을 제외한 모든 제출물은 흑백으로 표현한다.
- 3) 모든 공모안(전자파일포함)에는 필요한 사항 이외 참가자 인식이  
가능한 기호, 문자나 기타 어떤 표기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계도면




다. 설계설명서


라. 3차원 시뮬레이션


※ 예시: “에듀플랜” 자료실 참고(3D 시뮬레이션 동영상 샘플)



## 2.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요건

### 가. 청렴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5】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나. 설계수행 협약서

- 본 지침의 【서식 6】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다.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 기피 신청할 경우에만 본 지침의 【서식 7】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라.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 본 지침의 【서식 8】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마.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9】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바.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조회 기간에 공고일이 포함되도록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사. 인감 증빙서류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 모두 제출한다.

###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본 지침의 【서식 1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 III. 사업대지 현황 및 설계주안점

#### 1. 대지 현황

가. 지역·지구명 : 오산 세교2지구택지개발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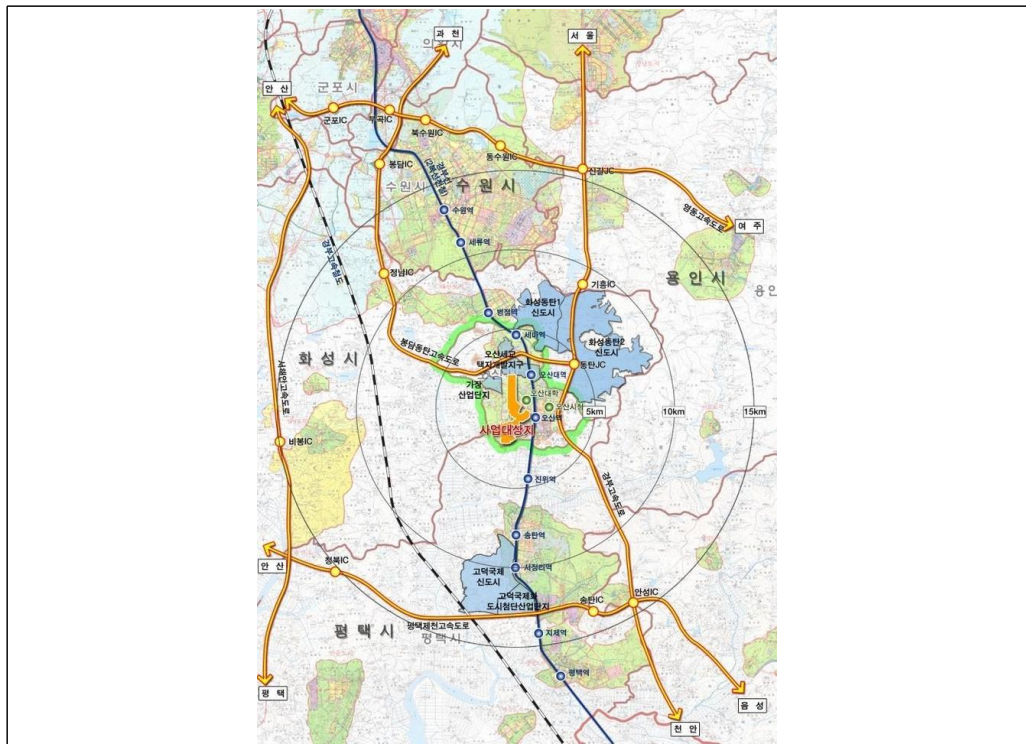
나.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예정)

2) 입지여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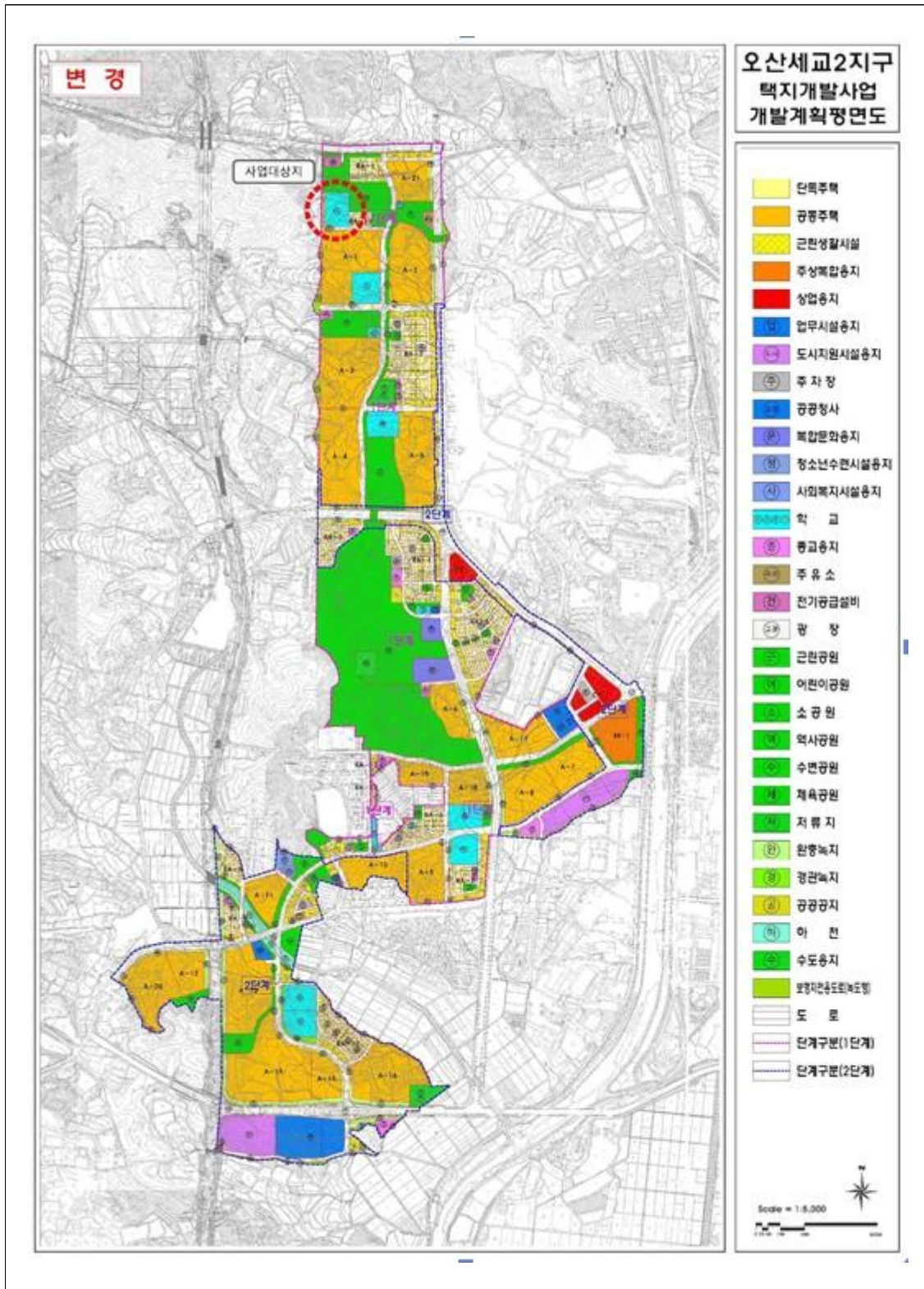
- 강남, 판교, 분당, 광고에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연결 축에 위치하고 있음
- 1번 국도를 기준으로 동쪽에 동탄1,2신도시, 오산시내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교지구 북쪽으로 세교1지구 및 화성시가 위치함

3) 대지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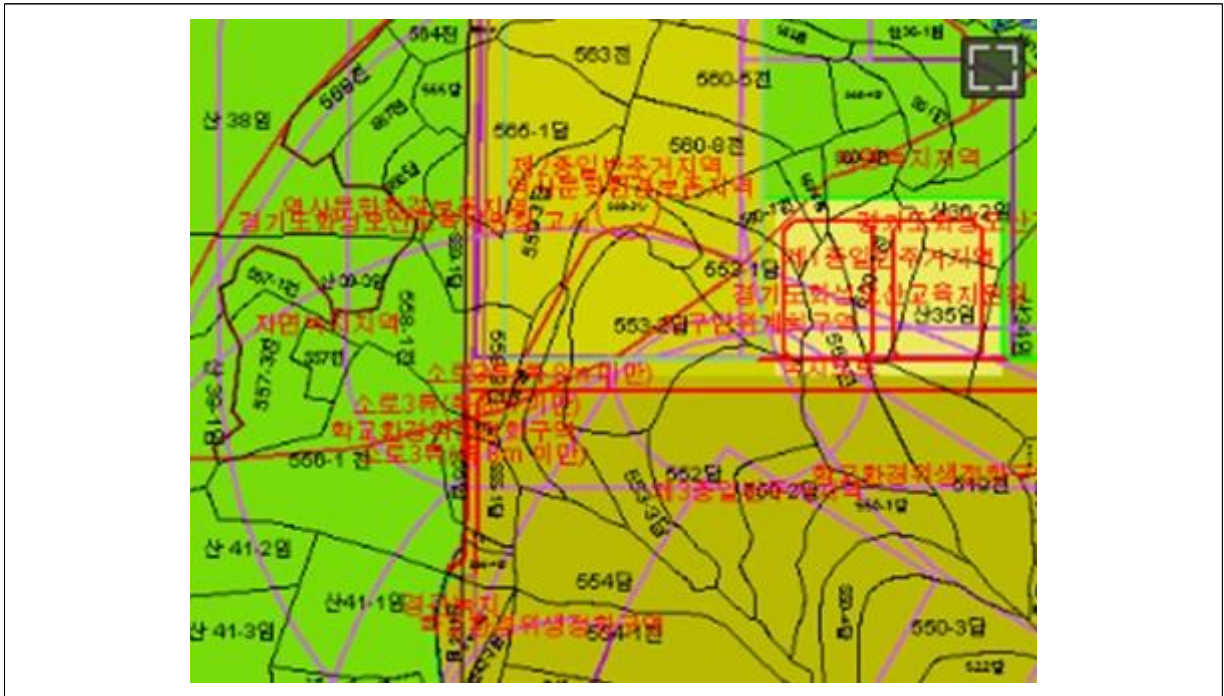


4-1) 토지이용계획도





### 4-2) 토지이용계획도





## 2. 설계 주안점 및 고려사항

### 가. 경기 미래형 학교 공간 특화 계획

####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

- 복합형 커뮤니티 공간 “실내 광장” 조성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을 참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창의지성시설 및 지원시설(도서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홈페이지 등),  
 활용율이 낮은 공간축소 · 통합하여 실내광장 조성 공간 확보
- 학교숲 조성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별첨 3-9 설계지침 학교숲분야’ 에 따라 계획한다.  
 □ [별표3]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 예시자료 참고

### 나. 배치계획

- 1) 교사동은 채광을 고려하여 빛이 잘 들어오는 남동향에 배치 확보하도록 설계 반영
- 2) 주변 환경, 시설과의 조화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배치
- 3) 지원시설인(실내체육실)은 지역에 개방되는 시설로 외부(공원)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교사동에서 실내체육실로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동선 및 디자인 반영
- 4) 동측 체육시설(오산에어돔 배드민턴구장) 및 공원과의 연계한 배치
- 5) 주변 건축물(남측 공동주택)로 인한 조망 및 일조권 침해가능성을 고려하여 배치

### 다. 동선계획

- 1)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출입구와 보행출입구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안전한 진입로 조성
- 2) 보차도를 분리하여 안전한 진입로 조성
- 3)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식당으로의 차량 동선 계획



- 4) 화재 및 비상시의 동선(피난·응급)을 계획하여 학생들의 빠른 피난 동선 확보 필요
- 5)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무장애 설계

라. 외부공간계획

- 1)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며 차량의 승하차 공간 등을 고려
  - 법정 주차대수를 산정할 시에는 소수점 반올림하여 산정
- 2) 내외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
- 3) 학생의 이탈 방지 및 외부인의 접근 차단을 위한 경계펜스 설치 계획
- 4) 법정 기준에 맞추어 조경 및 체육장 면적을 계획하여야 하며, 외부 체육장이란 보행자 동선 및 조경 공간과 겹치지 않고 친환경소재(마사토, 천연잔디, 흙, 모래 등)로 조성된 공간을 의미

마. 학생이 주인인 학교 구현

- 체육관은 편안하고 포근한 색상 및 디자인, 수업에 불편함이 없는 넓은 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난방 및 환기시설
- 화장실은 사용 시 불편함 없는 넉넉한 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기시설, 세면대 개소 확보 및 별도의 교사화장실 확보
- 내 외부 학생들 휴식공간 반영

바. 주요 실별 고려사항

- 1) 스페이스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간 구획
- 2) 식당 및 강당 등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 3) 시청각실, 도서실, 커먼스페이스 등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면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실내광장 형식으로 구성하며, 학생들이 교실 외 다목적공간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
- 4) 현관 및 1층 로비는 등하원시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넓은 공간으로 계획하고, 원생들의 이탈 방지 및 부모 대기공간 등의 계획 고려
- 5) 조리실은 가급적 1층에 배치하고 영양사실 및 조리원 휴게실 내 별도의 탈의·샤워·화장실이 조리장에 근접하도록 계획
- 6) 조리실은 오염작업구역과 비오염작업구역을 구분하여 계획



- 7)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위하여 지하층은 발생되지 않도록 지양하며, 기계실, 전기실 등은 지상층으로 계획
  - 8) 주 건물의 옥상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관련 시설이 설치됨을 감안하여 과도한 시설물(옥상조경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
  - 9)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전공별(3개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닝 계획
  - 10) 전문교과별 학습동(실습동)은 각 전문교과별 동별 구획이 아닌, 가능한 동일 건물에서 영역별 조닝 배치(층별 동별로 확연히 구분할 필요 없음)
  - 11)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비하여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 운영 및 온오프라인 연계 교수학습 혁신을 위해 사용자 중심 설계에 기반한 학점제형 학교공간을 계획
- ※ 기타 설계지침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 붙임 【별표1】 공모지침 위반처리기준 항목  
 【별표2】 심사 평가 항목  
 【별표3】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 예시자료  
 【서식1】 설계개요  
 【서식2】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3】 개략공사비 내역서  
 【서식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5】 청렴서약서  
 【서식6】 설계수행 협약서  
 【서식7】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서식8】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서식9】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서약서  
 【서식10】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표1】 공모지침 위반처리기준 항목

## 공모지침 위반처리기준 항목

### 1. 실격 적용 기준

위 반 항 목	비 고
1.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계획안의 수정이 시정 불가능한 것 또는 계획안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한 것 2. 건축규모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I-2-마항 참조) 3. 공모안의 작성지침을 위반(금지 또는 불가사항)하여 공정한 심사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II-1-나~라항 참조) *금지 또는 불가사항의 위반, 미준수 시 실격임을 명시한 사항의 위반 4. 공모안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3D 시뮬레이션 전자파일 포함) 5. 제출 응모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 부정, 비리행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7. 「경기도교육청 설계공모 사후 평가지침」에 따라 등급별 당선횟 수에 도달하여 당선 기회가 없는 경우	

### 2. 경미한 위반 기준

위 반 항 목	비 고
1. 실격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외의 기타 설계공모 지침 위반 2. 설계지침서에서 제공한 서식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경우	



【별표2】 주요심사 평가항목

## 주요심사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비중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형 커뮤니티 공간 “실내광장” 조성 계획</li> <li>○ 학교숲 조성 계획</li> </ul>	30%
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이용계획</li> <li>○ 보행자 및 차량 동선 계획</li> <li>○ 외부 공간 계획</li> </ul>	20%
건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면계획</li> <li>○ 단면계획</li> <li>○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li> </ul>	20%
창의적 디자인 및 특화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환경 조화</li> <li>○ 입면의 창의성</li> <li>○ 실현 가능성</li> <li>○ 내·외부 특화계획</li> </ul>	15%
기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계획의 경제성</li> <li>○ 건축물의 유지관리성</li> </ul>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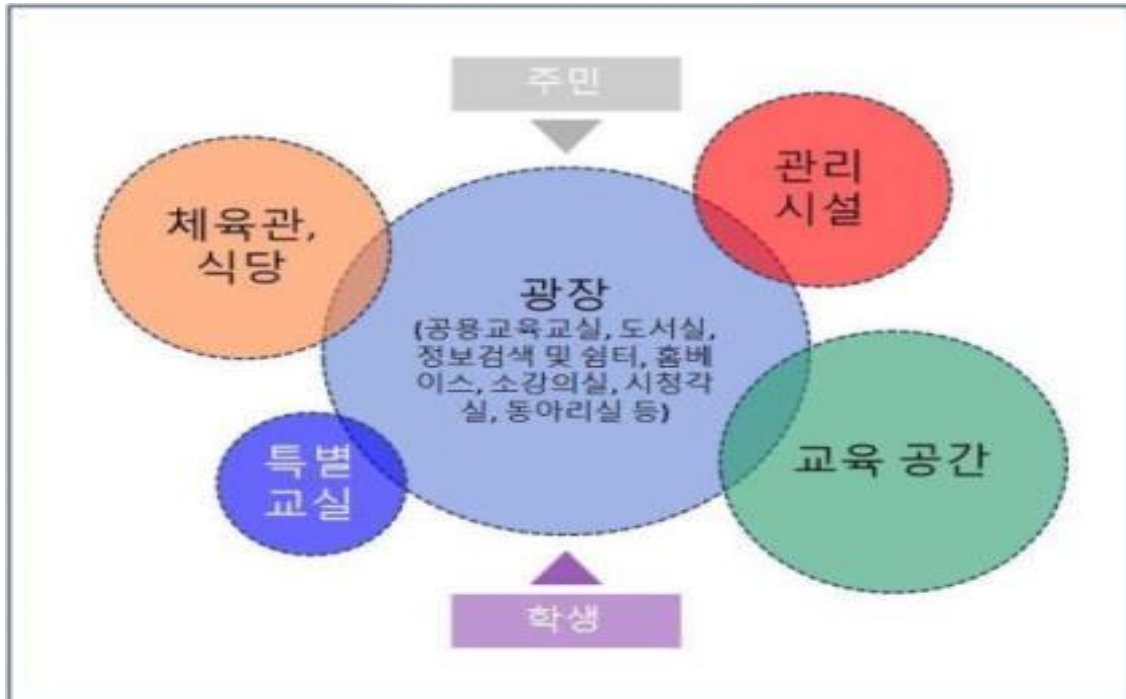
※주요심사 평가항목을 토대로 심사(투표제)한다.





【별표3】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 예시자료

## 1. 복합형 커뮤니티 공간 “실내 광장” 조성 개념도



## 2. 학교숲 조성 예시안



〈대상지 확대도(예시)〉



## 【서식1】 설계개요

## 설 계 개 요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 물 개 요	대 지 위 치		
	대 지 면 적	m <sup>2</sup>	
	지 역 지 구		
	건 축 면 적	m <sup>2</sup>	
	연 면 적	m <sup>2</sup>	
	구 조		
	층 수	층	
	최 고 높 이	m	
	건 폐 율	%	법정 : %
	용 적 율	%	법정 : %
기 타 시 설 물 개 요			
주 요 부 분 마 감			
설 비 개 요			
주 차 개 요			법정 : 대
조 경 개 요			법정 : %
기 타 사 항			

##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서식2】 세부용도 및 면적표

## 세부용도 및 면적표

구 분	실 명	기 준		계 획		증 감	
		실수 실	면적 m <sup>2</sup>	실수 실	면적 m <sup>2</sup>	실수 실	면적 m <sup>2</sup>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3】 개략공사비 내역서

## 개략공사비 내역서

(단위 : 천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율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공사								
직접공사비 계								
제경비 비율계산								
부가가치세								
총 공사비								

※ 비율산정 : 총공사비 대비 품명별 계상된 비율



## 【서식4】 관련법규 검토서

##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 규	대상	법적기준	설계적용	비 고
건축법 · 건축조례	직통계단설치	직통계단 개소까지 보행거리 미터 내 화구조는 미터 이 하가 되도록 설치		· 개소 및 가까운 개소까지 최대보행 거리 기재 보행거리
	내화구조 적용			
	방화구획적용			· 방화문 층간구획 설치 위치 기재
	조경면적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정북방향 인접대지경 계선에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이상 이격		· 건축물높이 · 이격거리
	기타항목			
주차장법 주차조례	주차대수			· 총대수 · 일반형대수 · 장애인대수 · 확장형대수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체육장면적			· 조경면적과 중복산입 금지 · 실내체육관 옥외 체육장면적을 구분하고 산출산식을 포함하여 기재 학교 유치원 별도
	기타항목			
지구단위 계획	건폐율			
	용적율			
	높이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차량출입 가능범위			
	기타			



【서식5】 청렴서약서

## 청 럽 서 약 서

□ 공 모 명 : (가칭)세교소프트웨어고 신축 설계공모

당사는 『(가칭)세교소프트웨어고 신축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및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6】 설계수행 약약서

## 설계수행 약약서

본 설계제안서가 당선작으로 선정될 경우 설계제안서 작성자가 향후 계획 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약하며, 불가피한 사정(이직, 퇴사, 사망 등)으로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경험과 경력이 동등이상인 대체인력을 보강할 것을 약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불이익 등 귀사에 대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설계제안서 작성 및 향후프로젝트 참여(예정)자

소 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경 력	비고
건축사사무소	소장	홍길동		학교시설 설계 1년 학교 외 건	

담당건축사 \_\_\_\_\_ (인)

[대표사]○○○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_\_\_\_\_ (인)

[공동]○○○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_\_\_\_\_ (인)

20    년    월    일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7】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공모명 : (가칭)세교소프트웨어고 신축 설계공모

기피내용

성명	소속	전문분야	기피사유
			하원칙에 의해 구체적 작성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제출자 소속 :

연락처 :

직위 :

성명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8】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가칭)세교소프트웨어고 신축 설계공모』 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제3.3.조에서 정한 내용의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9】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가칭)세교소프트웨어고 신축 설계공모』 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고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10】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 공모명 : (가칭)세교소프트웨어고 신축 설계공모

### 발생내용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음성녹음,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한다.)

※ 작성하여 신고처 팩스 또는 전자우편 송부 후 경기도교육청 심사담당자와 유선통화로 수신여부 확인할 것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소속 명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시설과(FAX 031-248-4123) 또는 공고문에 지정된 전자우편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공 동 수 급 표 준 협 정 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



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3. . .

○○○ (인)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